

비밀유지계약서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 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이하 "IPS"라고 함)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849-16 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이안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이하 "이안"라고 함)는 2016 년 12 월 5 일 ("계약발효일")부로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며 신의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다음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Gas box Module 화 (이하 "목적 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가 영업비밀, 노하우, 그리고 기타 비밀정보 등을 개발하여 왔고, 배타적인 권리자임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고객, 공급업자, 사업 배치, 기술 자료, 기술과 사업 데이터, 노하우, 공정, 디자인, 아이디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총괄하여 "비밀정보"라고 함).

제 3조 비밀정보

-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 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 ② "정보제공자"("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정보수령자"("비밀정보"를 제공 받는 상대 당사자 및 본 "목적 사업"을 실시함에 의해 "비밀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령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일체의 관계회사 및 관계자)에게 서면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대외비" 등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15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 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계약 기간 및 비밀유지의무

-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 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 년 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 4 조 비밀유지의무

- ① "정보제공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서 특별히 예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수령자" 및 "목적 사업"을 위하여 관련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관련 임직원 (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은 본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비밀정보"도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의 관계회사는 지배하는 회사, 지배당하는 회사, 또는 당사자의 공동지배 하에 있는 회사를 포함하며, 계약 당사자들에는 관계회사의 "관련 임직원"들을 포함한다.

제 5 조 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제공된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서 규정한 "목적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필요로 하고,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고지 받았으며, "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비밀정보"를 사용할 관계회사 및 그들 각각의 "관련 임직원"들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정보수령자"는 그의 관계회사들 및 "관련 임직원"들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 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바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었던 정보

- 2. "정보수령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무의 부담을 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 7 조 자격부여

본 계약의 체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나 자격을 수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모든 비밀정보는 공개 당사자의 소유이다.

제 8 조 정보의 반환

① "정보수령자"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상의 종료, 중단,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포함하거나 언급하고 있는 서류나 유형물(이는 그러한 자료들의



복사물이나 재생산물 포함)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 관계회사 또는 "관련 임직원"들은 "비밀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폐기하여야 하고, 폐기 후에는 그때부터 10 일 이내에 폐기절차 및 폐기 자료 목록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당해 확인서가 전술한 기간 이내에 "정보제공자"에게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그 확인을 위하는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수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험 자재와 샘플

- ①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모든 시험도구, 샘플, 분석 데이터, 자료, 시제품, 도면, 설계도 등(이하 종합하여 "시험 자재")은 "정보제공자"의 소유이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시험 자재"를 활용하여 시험과 실험을 할 수 있다.
-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시험 자재"를 제 3 자가 시험하거나 분석하게 할 수 없다. 모든 시험과 행위의 결과는 "정보제공자"의 소유이고,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비밀정보"가 된다.

제 10 조 법에 의한 공개

- ① "정보수령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한 공개 요구 등),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그러한 요구 상황 등의 발생 즉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만약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의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호조치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본 계약 조항의 준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정보수령자"는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정보수령자"는 법령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 조 당사자들의 관계

본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작이나 조합관계, 위임 관계 등이 설정된 것도 아니고.



본 계약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 사이에 "목적사업"에 대한 명백한합의가 실행되고 이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당사자도 본 계약, 또는 그들 각각의 관계회사 또는 "대표자"들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표시에 의해서 "목적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종류의 법적인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 12 조 보증

-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 3 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13 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본 계약 하에서 어떠한 조항의 포기나 계약위반, 의무불이행은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5 조 구속력

- ①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 3 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다.
- ③ 본 계약의 모든 규정은 계약 당사자 외 그 양수인, 승계인에게도 구속력을 가진다.



제 16 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귀속

- ①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으며, "정보수령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비밀정보"를 개량하여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양 당사자 공동 소유로 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여 그 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무

- 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도 계약해지 이전에 공개된 본 계약 상의 비밀정보와 관련한 수령자의 의무는 계약해지의 효과 발생 이후 3년간 유지된다.
- ③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1 억원을 위약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 18조 효력발생

본 계약서는 2부가 작성되며, 서두에 기재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또한 본 계약은 당사자의 서명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 19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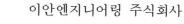
이에 그 증거로, 당사자들은 전문에 기재된 계약발효일자에 본 계약서 원본 2 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16. 12. 5.

주식회사 원익 아이피에스

직위: Whok

성명: 1120



직위: 대표이사

성명: 이 병 모



